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1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위성락・이훈기・이기헌

김민석 • 강유정 • 이병진

권칠승 • 박희승 • 이용선

윤후덕•박 정•정태호

정성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 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,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

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25조).

법률 제 호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외교업무"를 "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관계 강화 등 외교업무"로 한다.

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제4항)중 "심사 기준·시기"를 "심사 시기"로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
- 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의 외국어능력 · 업무추진실적(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·도덕성·교섭능력·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

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특임 공관장 자격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공관장 자격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조(특임공관장) ① 외교업무 제4조(특임공관장) ① 특정 국가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 나 지역과의 관계 강화 등 외 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 교업무-----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 으로 임용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(공관장 자격심사) ① 재외 제25조(공관장 자격심사) ① ----공관의 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 용되기 전에 자격심사(이하 "공관장 자격심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하며,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 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단서 신설> ---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3 <신 설>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에 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 사의 심사 기준·시기 및 절차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의 외 국어능력・업무추진실적(특임 공관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•도덕성・교섭능력・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 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 다. 다만,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- ⑥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공관장 자격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_____
- ----심사 시기-----
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